



제2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9.)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준]

목 차

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3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1
4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동의안	29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7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25. 11. 24.
- 나. 발의자 :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이유

- 소규모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를 통해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하게 양성화해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각종 지원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돼지나 가금류 등의 거리 규정은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이격 거리 중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0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안 별표 개정)

- 나.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800미터 이내인 거리 규정을 1,000미터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안 별표 개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06. ~ 11.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의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 조정을 통하여 소규모 농가 보호 등 지역 현실과 환경 영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제한구역을 300미터 이내를 유지하면서도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0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음.
- 이는 소규모 축사는 환경·악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계형 소규모 사육의 필요성과 신규진입이나 후계농 창업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면적 합산 규정을 신설하여 편법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돼지·가금류의 제한구역을 8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의 환경기준 강화흐름에 부합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돼지·가금류의 신축 가능 지역이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축산업 기반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축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체부지 발굴지원, 기존 농가의 시설현대화 유도 등 보완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조례 변경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변경 작성 용역
시행이 필요
- 나. 관련 조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6)	2차연도 (2027)	3차연도 (2028)	4차연도 (2029)	5차연도 (2030)	합계
군비	22	-	-	-	-	22

※ 2026년 1회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필요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변경 작성 용역 시행 : 22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표 정 애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 5. (생략)

② ~ ⑤ (생략)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①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가조수월지구)

1. 제안이유

- 임도를 신설하여 산불과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산물 운반 등 산림경영의 효성을 높이며, 더불어 항노화 힐링랜드와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비 : 1,999백만원(국 1,399, 도 300, 군 300)
- 2)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11, 산12일원
- 3) 기간 : 2026. 2. ~ 12.
- 4) 사업 내용 : 임도 신설 2.46km
 - 콘크리트포장 1.42km, 반중력식 옹벽 127m, 토사절취 11,924m² 등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373,042	6,678	3,625			
취득	토지	가조면 수월리 산11	임	301,141	2,588	1,453	2025 ~ 2026	임도 개설	농림 지역
		가조면 수월리 산12		71,901	4,090	2,172			

* 임도 편입 예정지 부분 매입

* 기준가격 산정 근거 : 공시지가 * 면적

- 가조면 수월리 산11 m²당 561원
- 가조면 수월리 산12 m²당 531

다. 추진경과

- 1) 2024. 12. 20. : 타당성 평가 실시
- 2) 2025. 5. 16. : 실시설계 완료
- 3) 2025. 9. 8. : 문화유산 변경허가

라. 향후계획

- 1) 2025. 11.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 2) 2025. 12. : 토지보상 및 등기 완료
- 3) 2026. 2. : 사업 착공
- 4) 2026. 12. : 사업 준공

마. 기대효과

-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항노화힐링랜드 등 산림휴양시설과 고견사 등의 문화유산 보호 가능.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4.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3. 검토의견

①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가조수월지구) 건은

- 힐링랜드 주차장~고견사를 연결하는 2.46km의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편입면적 6,678m²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가조수월지구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은 주목적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및 진화활동과 산악사고 신속대응이며 또한 임산물 운반 등 산림경영의 효율성 제고, 고견사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에 있음.
- 고견사는 지역 불교문화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이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보호대책 미비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의상봉은 관내에서 등산객이 많기로 손꼽히는 산으로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차량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임도개설은 산불 대응력 강화와 산악사고 구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할 것임.
- 다만, 경사도가 높고 암반이 많은 지형 특성상 암반을 피해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공 시 안전문제와 시공 후 임도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사 완화와 배수로 등이 설계단계에서 꼼꼼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검토결과 임도개설사업을 위한 임도 편입 예정지 부분매입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건물의 신축)

1. 제안이유

- 1)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일의 생태관광 명소 조성
- 2)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이 한 곳에 어우러진 생태·문화 복합시설로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 2) 사업비 : 13,580백만원 (전환 5,500, 도 1,650, 군 6,430)
- 3) 사업기간 : 2023. ~ 2027.(5년간)
- 4)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3번지 등 7필지 일원
- 5) 사업량 : 조성면적 15,678m²(연면적 2,000.3m²)
- 6) 사업내용 :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놀이마당 등

나. 취득재산 내역

- 1) 취득내역 (단위:m²,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형식)	연면적				
취득 (신축)	건물	남상면 월평리 2273번지 등 7필지 일원	건물 1동	2,000.3	11,439,000	2027	거창창포원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	거창군

2) 주요시설

층 별	세부시설	연면적(m ²)	비고
계		2,000.3	
지상2층	사무실, 부속실, 세미나&회의실, 휴게실, 계단&EV실, 화장실 훌&복도	549.95	
지상1층	전시실, 컨벤션홀, 시청각실, 부속실, 휴게실, 화장실, 로비&복도, 계단실&EV실, 필로티&캐노피	1,309.55	
지하1층	기전실, 계단실	82.5	
별동	경비실	14.40	
	야외무대	43.90	

다. 추진경과

- 1) 2020. 11. : 확장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 2) 2021. 11. :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 3) 2022. 3. :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
- 4) 2023. 1. : 거창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원안수용)
- 5) 2023. 3. : 제2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2023. 5. 22. 조건부 승인)
- 6) 2023. 9.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 7) 2023. 11.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 2024.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9)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0) 2025. 7.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 11) 2025. 7. ~ 10. :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 협의

라. 향후계획

- 1) 2025. 11.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2025. 11. : 토지수용 재결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
- 3) 2026. 1. ~ 3. : 지방재정투자 심사(1차) 의뢰(군→도) 및 승인
- 4) 2026. 1. : 경상남도계약심사 및 군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5) 2026. 3. :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6) 2026. 4. ~ 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1)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더불어 국내 제일의 생태관광지로 발돋음
- 2)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가

3. 사업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4. 위치도 등 : [붙임2]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3. 검토의견

②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건물의 신축) 건은

- 거창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시설확충을 위해 창포원 연접부지에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등의 생태·문화 복합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5억 8,000만원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확장계획 심의, 군 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은 창포원 방문객 증가와 국가정원 추진 등으로 인해 창포원을 거창군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세미나&회의실, 전시실, 컨벤션홀, 시청각실로 향후 수익구조를 보면 대관·전시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활용률이 저하될 경우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시설 결정 단계에서 대관·전시기능의 수요 예측이 있었는지, 그 외 운영 수익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창포문화관, 야외공연장, 다목적놀이마당은 운영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 시설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므로 운영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임.
- 검토결과 본 사업은 창포원과 연계한 관광·생태·문화 복합 콘텐츠 구축과 국가정원 지정 기반 마련, 창포원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생활권 내 문화공간 확대 등 지역관광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25. 11. 24.
- 나. 발의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이유

- 바둑은 세대 간 교류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두뇌 스포츠로서, 바둑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다. 바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바둑진흥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체육시설사업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바둑 진흥·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로 국민 정신건강, 여가 증진 등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조례로 제정취지는 적정하다 할 것임.
- 바둑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 시책 마련 조항을 두고 있어 법률 위반 사항은 없음.
- 거창군은 2025년 경남도민 체육대회에서 바둑 부분 군부 최우수를 차지한 바 있으며 거창한국기원을 비롯하여 바둑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반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바둑단체의 정의에서 회원수 등 세밀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등의 세부 내용이 없어 지원 시 형평성 논란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례 제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바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
- ▶ 관련 조문 : 안 제5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향후 사업추진 필요시 예산편성

4.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최 채 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產)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농 · 놙지 · 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 · 도유산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의 유치 · 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바둑진흥법」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10호, 2021. 4. 13., 일부개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 · 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 · 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 ·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이유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25.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한 현수탁자의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다.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 1동, 철탑시설, 부대시설 1식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 조		
3,971m ²	지상2층	258.0m ²	300.2m ²	철근콘크리트조	10타석	100m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마. 선정방법 :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선정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기간 연장(재계약) 필요성

- 1)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개축 사업 행정절차 이행(체육 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경남도 사업승인 및 고시) 지연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착공 가능
- 2)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사업 착공시까지 시설 운영 공백 기간 발생
- 3) 시설 사용 중지 여부에 대한 이용회원의 문의가 많고, 대다수 회원 착공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을 희망함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 해당 시설의 노후회 및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수탁자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임
- 5) 현 수탁자의 다년간 해당 시설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한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

나.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성과평가)

다. 향후계획

- 1)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 2025. 12.
- 2) 위수탁계약 체결 : 2025. 12.
- 3) 위탁계약 운영 : 2026. 1. 1. ~ 12. 31.

붙임 1.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증·개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026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재계약 방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
-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시설 운영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점에서 운영 필요성이 인정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 주례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기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항임.

- 또한 시설 노후 및 단기간 위탁 조건으로 공개 모집 시 수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 수탁자의 전문성과 다년간 관리 경험을 고려할 때 재계약 추진은 타당함.
- 본 골프연습장은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법령 및 조례상 민간위탁 근거가 명확하므로 본 동의안은 법적·절차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 기간(2025.12.31.) 만료 도래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현 수탁자의 전문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 능력을 반영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재계약)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군의회 동의)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 (성과평가)

II

추진배경

-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현 수탁자에게 해당 체육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거창군 골프 경기 진흥 및 활성화 효과 증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생활체육시설 저변에 기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기간 연장(재계약) 필요성

-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개축 사업 행정절차 이행(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 지역 변경 등 경남도 사업승인 및 고시) 지연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착공 가능
-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사업 착공시까지 시설 운영 공백 기간 발생
- 시설 사용 중지 여부에 대한 이용회원의 문의가 많고, 대다수 회원 착공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 희망
- 해당 시설 노후 및 단기간 위탁에 따른 수탁자 모집 불투명

I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2026. 12. 31.(1년)
- 위탁현황
 - 대상 : 거창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시설물 현황 : 골프연습장 1동, 철탑시설, 부대시설 1식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비고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3,971m ²	지상2층	258.0m ²	300.2m ²	철근콘크리트조	10타석	100m	

- 위탁내용 : 실외 골프연습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선정방법 :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	주소	기간	비고
김성원(개인)	거창읍 동동5길 68 하나로1차 101동 901호	2022. 8. 1. ~ 2025. 12. 31.	

- 시설 사용료 : 19,362천원/년 정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산정

IV

추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5. 11.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5. 12.
- 성과평가 실시 : 2025. 12.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12.
 - 구성인원 : 6명(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 공무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세무사·변호사 등
- 민간위탁 기간 연장(재계약)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5. 12.

불임2

관계 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70조의13, 제79조, 별표 1의2, 별표 19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31.~11. 18.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70조의13, 제79조, 별표 1의2, 별표 19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31.~11. 18.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일치성 확보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과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0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입목축적 변경은 현행 규정은 산지전용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을 따랐으나,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0조의2의 2항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중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된 바 개정안을 통하여 경미한 사항(면적 10% 이내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면적 10% 이상 변경)를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타당함.
- 안 제50조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 증설 가능 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영 제79조)과 일치시켜 기업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별표18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생산관리지역에 경로당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농촌지역 고령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타당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7. 1.>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 18.,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본조신설 2021. 7. 6.]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8. 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p>(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p> <p>(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p> <p>(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p> <p>(나) 삭제 <2016. 6. 30.></p> <p>(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 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나. 도시·군 관리계획	<p>(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다. 도시·군 계획사업	<p>(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p> <p>(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p>

	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수·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4. 5. 2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 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음·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6)에 따른 산지의 표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영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산지의 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구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요금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4)
 - 1) 대상: 병역명문가
 - 2)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안전총괄과 협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20.~11.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구를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수도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명문가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부칙을 통하여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설(제3조)함으로써, 조례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을 확보함.
-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바람직함.

- 감면율을 살펴보면 지원목적과 대상의 성격이 유사한 국가 유공자 등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며 세입 감소 규모가 크지 않아 군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과 기존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병역명문가 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가정용 1단계 요율 5톤 기준)으로 세입(사용료 수입) 감소
- 나. 관련 조문: 상수도요금 감면율(안 별표 4)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가. 병역명문가 가구 감면 규모는 2025년 8월 기준 등록 가구(93가구)를 적용하였을 때,
 - 1) 월 감면액: 약 3,870원 × 93가구 = 359천원
 - 2) 연간 감면액: 약 4,318천원(약 430만원)
- 나. 연간 소요 예산은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수도사업소장 박 길 규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본조신설 2010. 11. 26.]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4.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구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요금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및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7)
 - 1) 대상: 병역명문가
 - 2)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안전총괄과 협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0. 20.~11.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구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병역명문가를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부칙을 통하여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설(제3조)함으로써, 조례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을 확보함.

-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바람직함.
- 감면율을 살펴보면 지원목적과 대상의 성격이 유사한 국가 유공자 등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며 세입 감소 규모가 크지 않아 군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과 기존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병역명문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가정용 1단계 요율 5톤 기준)으로 세입(사용료 수입) 감소
- 나. 관련 조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안 별표 7)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가. 병역명문가 가구 감면 규모는 2025년 8월 기준 등록 가구(93가구)를 적용하였을 때,
 - 1) 월 감면액: 약 1,060원 × 93가구 = 98천원
 - 2) 연간 감면액: 약 1,182천원(약 110만원)
- 나. 연간 소요 예산은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수도사업소장 박 길 규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4.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설>

-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